

약제비 계산서 · 영수증

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	[]			
환자 성명	[]	투약일수	[]	
조제일	[]	야간(공휴일)조제	[] 야간	[] 공휴일
급여				
항목	일부 본인부담		전액	비급여
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본인부담	
약품비	[]	[]	[]	[]
조제기본료	[]	[]	[]	[]
복약지도료	[]	[]	[]	[]
조제료	[]	[]	[]	[]
관리료	[]	[]	[]	[]
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요양급여	[]	[]	[]	[]
65세 이상 등 정액	[]	[]	[]	[]
합계	①[]	②[]	③[]	④[]
⑤ 약제비 총액 (①+②+③+④)	[]		카드	[]
		납부한 금액	현금영수증	[]
⑥ 환자부담 총액 (⑤-②)	[]		현금	[]
			합계	[]
현금영수증()		*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		
신분확인번호	[]	[]	[]	[]
현금영수증 승인번호	[]	[]	[]	[]
처방한 요양기관	[] 의원급 · 보건기관	[] 병원급		
	[] 종합병원	[] 상급종합병원(종합전문요양기관)		
사업자등록번호	[]	[]	상 호	[]
사업장 소재지	[]			[]
전화번호	[]	[]	대 표 자	[] [인]
	년	월	일	
항목별 설명	일반사항 안내			

1. 일부 본인부담: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30% ~ 50%(의료급여 500원)이나,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에 따른 일부 본인부담 항목(선별급여)에는 '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'에서 고시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.
2. 전액 본인부담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6 또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
1. 야간(공휴일)조제 등 이 계산서 ·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, 홈페이지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계산서 · 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: http://현금영수증.kr)

148mm×210mm(백상지 80/㎡)